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정당에의 가입·활동이 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A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한 동 규정에 따른 당연면직 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아야 할 것임.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정당에 가입한 것을 해고(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귀 사업장의 업무특성 또는 당해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감안할 때 특정정당에 가입하는 것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적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가입만을 이유로 당연면직 처리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사료됨. 다만, 정당활동 과정에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활동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의 해태 또는 복무규율의 위반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해고 등의 처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Q 파업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한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

A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 여부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를 가지고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함.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러한 근로자의 이중취업 행위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대외적 신용·체면을 손상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소속 회사에 대한 성실한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한솔노무사사무소(031-877-7582-3)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꽤 많은 남성은 클리토리스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올바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A 클리토리스는 여성 외성기의 전방 정점에 위치해 있다. 팥알 크기의 클리토리스의 음핵 귀두는 볼 수가 있으나, 클리토리스의 축에 해당하는 음핵체는 피부로 덮여 있기 때문에 피부를 살며시 밀어 올려야만 보인다.

클리토리스의 크기와 모양은 여성에 따라 여러 가지다. 대부분은 안쪽에 있어 보이지 않는다.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클리토리스는 치골 방향으로 후퇴되고 음핵귀두가 외부 접촉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음순이 팽창한다.

오르가즘이 있는 잠시 후에 클리토리스는 다시 자극 전의 위치로 되돌아간다. 흔히 말하는 것과는 달리 클리토리스의 음핵 귀두는 모든 여성에게 있어 성 활동의 '마법의 열쇠'는 아니다. 실제로 클리토리스는 직접 자극할 때 불쾌하거나 혹은 사람에 따라 고통스럽기까지 한다. 즉 어떤 여성에게는 쾌감을 일으키는 성감대가 다른 여성에게는 고통이 되는 수도 있다. 성적 파트너끼리의 대화가 필요한 이유의 한 예가 된다.

【킨제이 보고서】발췌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타(031-542-3171)

의·학·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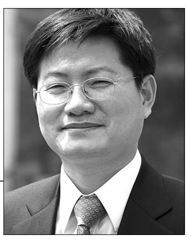

포천병원 내과 **박선수**

고혈압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협심증·심근경색증), 심부전, 신부전 등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므로 이들 심혈관계 합병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혈압을 적절히 치료해야 합니다.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고혈압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고, 생활습관의 개선만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도 있으며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중에도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력하여 개선할 수 있는 생활습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체중의 감량 : 비만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금연 : 흡연은 그 자체로 혈압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강력한 위험인자입니다.

3) 운동 :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4~5회 이상, 30~45분 가량 빨리 걷기 정도의 운동만으로도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4) 염분섭취의 제한 : 소금을 과량 섭취하면 수분저류를 일으키고 체내에 수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염분섭취 제한의 목표는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음주의 절제 : 과도한 음주는 그 자체로 혈압을 상승시키고 고혈압 약제의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6) 식이요법 : 과일, 채소, 섬유소의 섭취를 높이고 포화지방산의 섭취를 줄이는 식이요법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혈압은 자각증상이 별로 없고 평생동안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거나 중단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고혈압은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60)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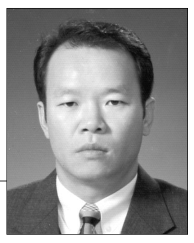

변호사 **김제동**

【방치한 무연고 묘지를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

Q 저희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는데, 그 선산에는 후손들이 관리하지 않는 분묘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분묘들은 오랫동안 돌보지 아니하여 현재 분묘인지 알아볼 수 없는 것도 상당수 있어서 산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선산의 조림 및 산림수익사업을 하는 데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위 분묘들을 이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A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묘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과 지역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자 또는 연고자등으로 하여금 분묘에 대한 일제 신고를 하게 할 수 있고, 일제 신고의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묘는 연고자가 없는 분묘로 보며, 도지사는 국토활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연분묘의 유골을 공·사설 납골당에 집단 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5조의2). 또한 도지사는 묘지이외의 토지 또는 설치자의 승낙없이 타인의 묘지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그 매장자 기타 연고자에게 개장(改葬)을 명할 수 있고, 매장자 기타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할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공고를 한 후 이를 개장할 수 있습니다(제16조).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그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공고를 한 후 개장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공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신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공고는 적어도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그 개장의 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월로 하고 있습니다(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문의 : 변호사 김제동 법률사무소 (031-829-9311)

전·기·상·식

한전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장 **신재우**

Q 계량기가 집안에 달려 있어 대문 밖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관할 한전에 전화로 계량기 이설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현장조사 후 즉시 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장여건상 즉시 이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다른 고객과 함께 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집안에 있는 계량기는 한전부담으로 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고객의 건물구조 변경, 또는 담장이설, 미관저해 등으로 계량기 부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고객부담으로 이설하셔야 합니다.

Q 집수리(개축) 관계로 계량기를 옮겨야 하는데 한전에 신청하면 됩니까?

A 집수리나 미관저해 등의 이유로 계량기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 부담으로 계량기를 옮겨야합니다. 위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한전에 사전 이설 신고를 하여 재봉인 요청을 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침과 검사가 용이한 옥외의 적정위치로 옮겨셔야 합니다.

계량기 위치 변경에 따른 내선공사는 정부로부터 전기공사업면허를 받은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옮기도록 하셔야 합니다.

Q 사용량이 당월지침보다 많은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예: 사용량 147, 당월지침 46)

A 사용량이 당월지침보다 많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교환하였거나 계량기지침 원판이 한바퀴 회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전월지침이 9899이고 당월지침이 0046인 경우 이달 사용량은 147kWh (10,000－-9,899+46)가 됩니다.

Q 계량기에서 소리가 크게 나는데 교환해 줄 수 있습니까?

A 계량기는 내부 원판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낮은 소음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 해도 위험하지는 않으며 옆집의 계량기보다 소리가 너무 크다고 생각되시면 한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하여 이상이 있으면 무료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지역번호 없이 123번)

☞문의 : 포천지점 수요관리파트(031-539-0257)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종**

Q 사업과 관련된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당해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2007사업연도까지만 적용하며 2008년부터는 상환 차손·익만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A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사업자는 매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는 고유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물론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포함하며,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외의 소득으로는 주로 재고자산의 평가차액 및 화폐성 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액으로, 화폐성 자산으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현금등가물·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이 있으며 화폐성부채로는 차입금·외상매입금·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차액은 당초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평가할 때 발생되며 이때 발생된 차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외화차입금이 10만 미국달러의 경우 차입당시 환율이 950원이라 하면 원화 기장액이 95,000,000원이었으나, 2007.12.31.현재 환율이 938원으로 원화로 평가하면 93,800,000원이 되므로 평가차액이 △1,200,000원이 됩니다.

결국 연말에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고 하면 1,200,000원 줄어드는 것으로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때의 이득의 효과를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동 차입금이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즉 사업과 관련이 없는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평가차익은 사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의 : 세무사 박 운 종(031-872-6116)

통합민주당

18대 국회의원선거 포천시 연천군 선거구

능력

지역경제 살리는

경제전문가 장명재를

후원해 주십시오!

• 포천시 일동초등학교 입학
• 서울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부대변인(전)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전)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화 전문위원(전)
• 문희상 당의장 경제특보(전)
• 삼성전자(정보통신부문) 근무(전)

18대 국회의원후보 장명재 후원회 후원회장 이윤우 올림

후원계좌 농협 175-02-509348 (예금주 : 이정림)

www.visionmj.or.kr Tel.031-535-1775 Fax.031-535-1776 E-mail. twin1014@naver.com

• 단체나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후원회원이 아닌 분도 후원금을 내실 수 있으며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하시는 금액은 각종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영수증 발급)

이 광고는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광고입니다.

경제는 명재 명재는 경제

OK! 경제전문가

1 장명재

포천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한국리틀연맹 · 포천리틀야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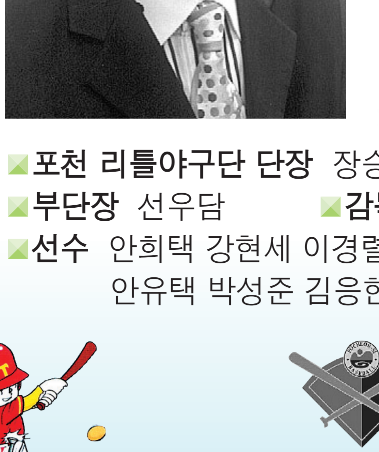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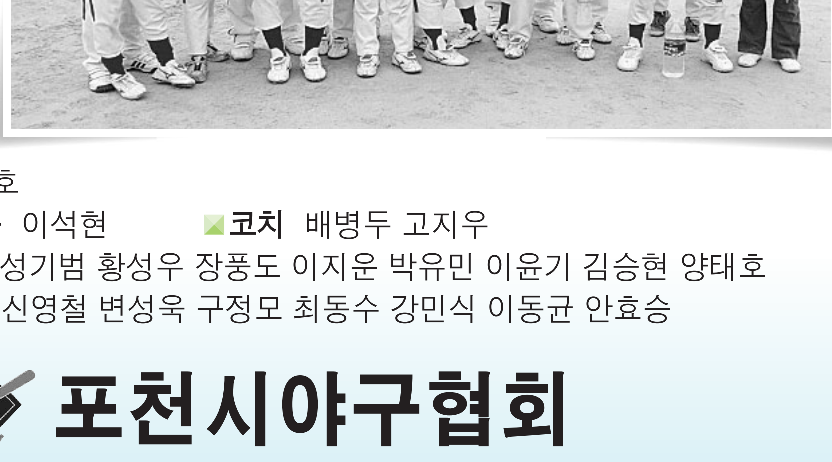

포천 리틀야구단 단장 장승호
부단장 선우담 감독 이석현 코치 배병두 고지우
선수 안희택 강현세 이경렬 성기범 황성우 장풍도 이지운 박유민 이윤기 김승현 양태호 안유택 박성준 김응현 신영철 변성욱 구정모 최동수 강민식 이동균 안효승

포천시야구협회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143-4 유한APT 상가 104동 102호
Tel. 535-0867 Fax. 536-0868 H.P. 011-242-0869 E-mail : csh9110002@naver.com
포천리틀야구단 · 희망후원회 : 농협 171463-52-109559(예금주 : 포천리틀야구단 장승호)